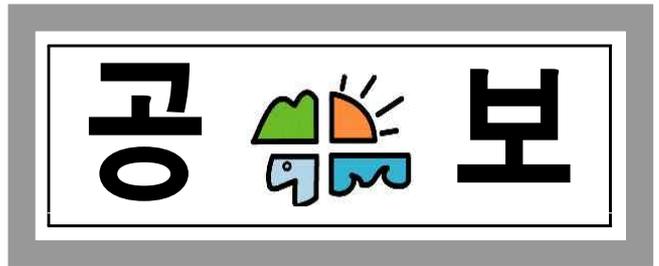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06호 2012년 6월 20일(수)

규 칙

-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2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
- 속초시 통·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3

공 고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8
- 재난대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
-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23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6월 20일

속초시규칙 제1288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관련)

직류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 계	합 계		549	348	11	37	86	67
	정 무 직		1	1	-	-	-	-
	일 반 직		428	295	7	22	46	58
	별 정 직		2	2	-	-	-	-
	지 도 직		6	-	-	6	-	-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1	-	-	1	-
	일반직 또는 지도직		5	-	-	4	-	1
	기 능 직		103	49	4	5	37	8
	학예연구사		2	-	-	-	2	-
정무	정 무 직		1	1	-	-	-	-
별 정 직	소 계		2	2	-	-	-	-
	6급 상당	소 계	1	1	-	-	-	-
		비 서 실 장	1	1	-	-	-	-
	7 급 상 당	소 계	1	1	-	-	-	-
		화생방관리원	-	-	-	-	-	-
		체 육 지 도 사	1	1	-	-	-	-
	8 급 상 당	소 계	-	-	-	-	-	-
		사회복지전문요원	-	-	-	-	-	-
		부 녀 봉 사 원	-	-	-	-	-	-
		청 소 년 지 도 사	-	-	-	-	-	-
	지 도 직	소 계		6	-	-	6	-
		5급	농 촌 지 도 관	-	-	-	-	-
6급 상당		농 촌 지 도 사	5	-	-	5	-	
4 급	소 계		1	1	-	-	-	
	국 가 서 기 관		-	-	-	-	-	
4급 또는 5급	소 계		3	2	-	1	-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1	-	-	1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2	-	-	-	
5 급	소 계		32	16	2	-	6	8
	지방행정사무관		10	8	2	-	-	-
	지방복지사무관		-	-	-	-	-	-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지방의무사무관		-	-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6	3	-	-	1	2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3	1	-	-	1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1	-	-	-	1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시설사무관		2	-	-	-	-	2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	-	-	-	-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1	-	-	-	1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2	-	-	-	2	-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	1	-	-	-	-	1
	지방행정·지방시설·지방녹지사무관	1	1	-	-	-	-
	지방행정·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학예연구원	1	-	-	-	1	-
	소 계	110	76	2	6	16	10
6 급	지방행정주사	42	32	2	-	7	1
	지방녹지주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	-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지방시설주사	7	5	-	-	2	-
	지방사회복지주사	-	-	-	-	-	-
	지방전산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지방세무주사	2	2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또는 세무주사	1	-	-	-	-	1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8	6	-	-	-	2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1	-	-	1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3	3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보건주사	2	1	-	-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0	9	-	-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2	2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8	4	-	-	-	4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1	1	-	-	-	-
	사회복지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시설주사	-	-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환경주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1	-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공업주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3	-	-	3	-	-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행정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2	-	-	-	-	2	
소 계	151	106	2	8	16	19	

7	지방행정주사보	74	50	2	1	6	15	
	지방농업주사보	1	-	-	1	-	-	
	지방녹지주사보	2	2	-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3	3	-	-	-	-	
	지방시설주사보	14	13	-	-	1	-	
	지방통신주사보	1	1	-	-	-	-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기록연구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보	2	1	-	1	-	-	
	지방세무주사보	5	5	-	-	-	-	
	지방공업주사보	6	2	-	-	4	-	
	지방간호주사보	3	-	-	3	-	-	
	지방환경주사보	2	2	-	-	-	-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	-	2	-	-	
	지방전산주사보	2	2	-	-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8	4	-	-	-	4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7	7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무주사보	7	7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녹지주사보	1	1	-	-	-	-	
	지방통신주사보, 지방전자통신주사보	1	1	-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1	-	-	-	1	-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연구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	-	-	1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연구사	1	-	-	-	1	-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2	1	-	-	1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1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1	1	-	-	-	-	
	소 계	114	87	1	7	7	12	
	8	지방행정서기	51	41	1	-	2	7
		지방녹지서기	<u>3</u>	<u>3</u>	-	-	-	-
		지방농업서기	2	-	-	2	-	-
		지방해양수산서기	2	2	-	-	-	-
지방시설서기		6	6	-	-	-	-	
지방공업서기		5	2	-	-	3	-	
지방환경서기		1	1	-	-	-	-	
지방보건서기		5	3	-	2	-	-	
지방통신서기		-	-	-	-	-	-	
지방간호서기		1	-	-	1	-	-	
지방세무서기		<u>8</u>	<u>8</u>	-	-	-	-	
지방의료기술서기		1	-	-	1	-	-	
지방전산서기		2	2	-	-	-	-	
지방사회복지서기		<u>8</u>	<u>3</u>	-	-	-	<u>5</u>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녹지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7	6	-	-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전산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4	4	-	-	-	-		
지방환경서기 또는 지방보건서기	1	-	-	1	-	-		
급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보건서기, 지방간호서기	1	1	-	-	-	-	
		지방전산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	-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환경서기, 지방공업서기	1	-	-	-	1	-	
		지방해양수산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공업서기	1	1	-	-	-	-	
		지방시설서기, 지방공업서기	-	-	-	-	-	-	
9 급		소 계	17	7	-	-	1	9	
		지방행정서기보	3	1	-	-	1	1	
		지방시설서기보	-	-	-	-	-	-	
		지방세무서기보	-	-	-	-	-	-	
		지방전산서기보	-	-	-	-	-	-	
		지방복지서기보	-	-	-	-	-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4	6	-	-	-	8	
		지방공업서기보	-	-	-	-	-	-	
일반 또는 별저		소 계	2	1	-	-	1	-	
		지방학예연구사 또는 지방별정 6급	2	1	-	-	1	-	
일반 또는 지도		소 계	5	-	-	4	-	1	
		촌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	1	-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3	-	-	3	-	-	
		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1	-	-	-	-	1	
6 급		계	103	49	4	5	37	8	
		소 계	5	4	-	-	1	-	
		통신	1	1	-	-	-	-	
		전화 상담	-	-	-	-	-	-	
		전기	1	1	-	-	-	-	
		기계	기계	-	-	-	-	-	
			영사	-	-	-	-	-	
		열관리	열관리	-	-	-	-	-	
			운전	1	1	-	-	-	
		화공	화공	1	-	-	-	1	
			위생	-	-	-	-	-	
		사무	워드	-	-	-	-	-	
			필기	1	1	-	-	-	
			전산	-	-	-	-	-	
		조무	조무	-	-	-	-	-	
			지도	-	-	-	-	-	
	7		소 계	28	16	1	-	11	-
			통신	2	2	-	-	-	-
			전화 상담	1	1	-	-	-	-
		전기	3	1	-	-	2	-	
		기계	기계	2	-	-	-	2	
			영사	1	1	-	-	-	
		열관리	1	1	-	-	-	-	

기
능
직

8	급	운 전	운 전	6	5	-	-	1	-	
		화 공	화 공	1	1	-	-	-	-	
		위 생	위 생	-	-	-	-	-	-	
	사 역		-	-	-	-	-	-		
	사 무	워 드	1	-	1	-	-	-		
		필 기	2	1	-	-	1	-		
		전 산	1	-	-	-	1	-		
	조무 / 사무	조 무/사무(워드)	7	3	-	-	4	-		
		지도/사무(워드)	-	-	-	-	-	-		
	소 계		25	14	-	-	11	-		
	9	급	통 신	통 신	1	1	-	-	-	-
			전화 상담	전화상담	1	1	-	-	-	-
전 기			전 기	4	-	-	-	4	-	
기 계		기 계	2	2	-	-	-	-		
		영 사	-	-	-	-	-	-		
열관리		열 관 리	1	-	-	-	1	-		
운 전		운 전	8	5	-	-	3	-		
화 공		화 공	-	-	-	-	-	-		
위 생		위 생	1	-	-	-	1	-		
		사 역	1	-	-	-	1	-		
사 무		워 드	-	-	-	-	-	-		
		필 기	2	1	-	-	1	-		
	전 산	3	3	-	-	-	-			
조무 / 사무	조 무/사무(워드)	1	1	-	-	-	-			
	지도/사무(워드)	-	-	-	-	-	-			
소 계		35	15	3	2	10	5			
10	급	통 신	통 신	-	-	-	-	-	-	
		전화 상담	전화상담	-	-	-	-	-	-	
		전 기	전 기	1	1	-	-	-	-	
	기 계	기 계	5	-	-	-	5	-		
		영 사	-	-	-	-	-	-		
	열관리	열 관 리	1	1	-	-	-	-		
	운 전	운 전	5	2	1	2	-	-		
	화 공	화 공	-	-	-	-	-	-		
	위 생	위 생	-	-	-	-	-	-		
		사 역	-	-	-	-	-	-		
	사 무	워 드	6	2	1	-	3	-		
		필 기	6	1	-	-	-	5		
전 산		2	-	1	-	1	-			
조무 / 사무	조 무/사무(워드)	8	7	-	-	1	-			
	지도/사무(워드)	1	1	-	-	-	-			
소 계		10	-	-	3	4	3			
10	급	통 신	통 신	-	-	-	-	-	-	
		전화 상담	전화상담	-	-	-	-	-	-	
		전 기	전 기	-	-	-	-	-	-	
	기 계	기 계	-	-	-	-	-	-		
		영 사	-	-	-	-	-	-		
	열관리	열 관 리	-	-	-	-	-	-		
운 전	운 전	2	-	-	2	-	-			

	급	화 공	화 공	-	-	-	-	-	-
		위 생	위 생	-	-	-	-	-	-
			사 역	-	-	-	-	-	-
		사 무	워 드	-	-	-	-	-	-
			필 기	3	-	-	-	-	3
		조 무	전 산	1	-	-	1	-	-
			조 무	4	-	-	-	4	-
지 도	-		-	-	-	-	-		
학예연구사	계			2	-	-	-	2	-
	6급 상당			-	-	-	-	-	-
	7급 상당			2	-	-	-	2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6월 20일

속초시규칙 제1289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를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로 한다.

제8조 중 제41호· 제42호· 제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1. 세외수입 체납액 총괄관리
42. 세외수입 체납관련 소송수행
43. 그밖에 세입 및 세외수입 체납관련 업무에 관한사항

제18조 중 제52호를 제57호로 하고, 제52호부터 제56호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7호(종전의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트 일원 도시개발 사업
53. 중앙동 고지대 주택재개발 사업
54.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 도시개발 사업
55. 조양동 새마을 재개발 사업
56.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 이주에 관한 사항

57. 그 밖에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제7호·제8호·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단장의 직급) <u>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속초발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재난산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3조(실·과·단장의 직급) <u>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속초발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관, 민원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u>하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재난산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u></u></p>
<p>제8조(세무과)세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40.(생략) <u>< 신설 ></u> <u>< 신설 ></u> <u>< 신설 ></u></p>	<p>제8조(세무과)세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40.(현행과 같음) 41. 세외수입 체납액 총괄관리 42.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소송수행 43. 그 밖에 세입 및 세외수입 체납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p>
<p>제18조(도시디자인과)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51.(생략) <u>< 신설 ></u></p>	<p>제18조(도시디자인과)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51.(현행과 같음) 52.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트 일원 도시개발사업</p>

<p><u>〈 신설 〉</u> <u>〈 신설 〉</u> <u>〈 신설 〉</u> <u>〈 신설 〉</u></p> <p><u>52. 그 밖에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건축, 주택에 관한 사항</u></p>	<p><u>53. 중앙동 고지대 주택 재개발 사업</u> <u>54.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 도시개발 사업</u> <u>55. 조양동 새마을 재개발 사업</u> <u>56.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에 관한 사항</u> <u>57. 그 밖에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u></p>
<p>제20조(속초발전추진단)속초발전추진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6.(생략)</p> <p><u>7.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에 관한 사항</u></p> <p><u>8. 중앙동 고지대 재개발에 관한 사항</u></p> <p><u>9. 조양동 새마을 재개발에 관한 사항</u></p> <p>10. ~ 18. 〈 생략 〉</p>	<p>제20조(속초발전추진단)속초발전추진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6.(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10. ~ 18.(현행과 같음)</p>

속초시 통·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6월 20일

속초시규칙 제1290호

속초시 통·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통·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금호동 제29통·제30통, 노학동 제11통·제47통·제48통 구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구 역				
금호동	제29통	제1반	속초 e-편한세상아파트	105동 일원			
		제2반	속초 e-편한세상아파트	106동 일원			
		제3반	속초 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일원			
		제4반	레이크빌아파트 101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204호~1104호		
		제5반	레이크빌아파트 102동	101호~1201호,	102호~13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30통	제1반	생모리츠아파트	101동 일원			
		제2반	생모리츠아파트	102동 일원			
		제3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1호~1901호,	102호~1902호		
		제4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3호~1903호,	104호~1904호		
		제5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5호~1805호,	106호~1806호		
	노학동	제11통	제1반	로얄2차아파트 A동	1호~11호		
			제2반	로얄2차아파트 B동	1호~12호		
			제3반	로얄2차아파트 C동	1호~4호		
제4반			로얄2차아파트 C동	5호~8호			
제47통		제1반	하우스토리아아파트 101동	201호~901호	202호~1502호		
			관리사무소 일원,	경로당 일원			
			하우스토리아아파트 102동	201호~1701호	102호~1602호		
		제2반	하우스토리아아파트 102동	103호~1503호	104호~1304호		
				105호~1205호	106호~906호		
				상가시설 일원			
		제3반	하우스토리아아파트 102동	107호~1707호	108호~1708호		
				109호~1609호	210호~1510호		
		제4반	하우스토리아아파트 103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제5반	하우스토리아아파트 103동	103호~1703호	104호~1704호		
				105호~1405호	103호~806호		

명 칭			구 역		
노학동 제48통	제1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4동	201호~1201호	102호~14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2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4동	105호~1905호	106호~1906호
				107호~2007호	108호~2008호
	제3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5동	2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4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6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903호	104호~1904호
	제5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6동	105호~2005호	106호~2006호
			하우스토리아파트 107동	101호~1101호	102호~1702호
	제6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7동	103호~2003호	104호~2004호
				105호~2005호	106호~1506호
			107호~1007호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현 행	개 정 안
금호동	제29통 제1반 <생략> 제2반 <생략> 제3반 <생략> <신설> <신설> 제30통 제1반 레이크빌아파트 101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제2반 레이크빌아파트 101동 103호~1503호, 204호~1104호 제3반 레이크빌아파트 102동 101호~1201호, 102호~1302호 제4반 레이크빌아파트 102동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신설> 제31통 제1반 생모리츠아파트 101동 일원 제2반 생모리츠아파트 102동 일원 제3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1호 ~ 1901호, 102호~1902호 제4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3호 ~ 1903호, 104호~1904호 제5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5호 ~ 1805호, 106호~1806호	제29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4반 레이크빌아파트 101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204호~1104호 제5반 레이크빌아파트 102동 101호~1201호, 102호~13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30통 제1반 생모리츠아파트 101동 일원 제2반 생모리츠아파트 102동 일원 제3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1호~1901호, 102호~1902호 제4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3호~1903호, 104호~1904호 제5반 생모리츠아파트 103동 105호~1805호, 106호~1806호 제31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 명	현 행	개 정 안
노학동	제11통	제11통
	제1반 주공1차아파트 1,7,8,9,10,11동 일원	제1반 로얄2차아파트A동 1호~11호 일원
	제2반 주공1차아파트 2,3,5,6,9동 일원	제2반 로얄2차아파트B동 1호 ~ 12호 일원
	제3반 로얄2차아파트A동 1호~11호 일원	제3반 로얄2차아파트C동 1호 ~ 4호 일원
	제4반 로얄2차아파트B동 1호~12호 일원	제4반 로얄2차아파트C동 5호 ~ 8호 일원
	제5반 로얄2차아파트C동 1호~4호 일원	<삭제>
	제6반 로얄2차아파트C동 5호~8호 일원	<삭제>
	<신설>	제47통
	<신설>	제1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1동 201호~901호 202호~1502호, 관리사무소일원, 경로당 일원, 하우스토리아파트 102동 201호~ 1701호, 102호~1602호 일원
	<신설>	제2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2동 103호~1503호, 104호~1304호, 105호~1205호 106호~906 호 상가시설 일원
	<신설>	제3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2동 107호~1707호 108호~1708호, 109호~1609호 210호~1510호
	<신설>	제4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3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신설>	제5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3동 103호~1703호 104호~1704호, 105호~1405호 103호~806호
	<신설>	제48통
<신설>	제1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4동 201호~ 1201호, 102호~14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신설>	제2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4동 105호~1905호 106호~1906호 107호~2007호, 108호~2008호	
<신설>	제3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5동 2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신설>	제4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6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903호 104호~1904호	
<신설>	제5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6동 105호~2005호 106호~2006호, 하우스토리아파트 107동 101호~1101호 102호~1702호	
<신설>	제6반 하우스토리아파트 107동 103호~2003호 104호~2004호 105호~2005호 106호 ~1506호 107호~1007호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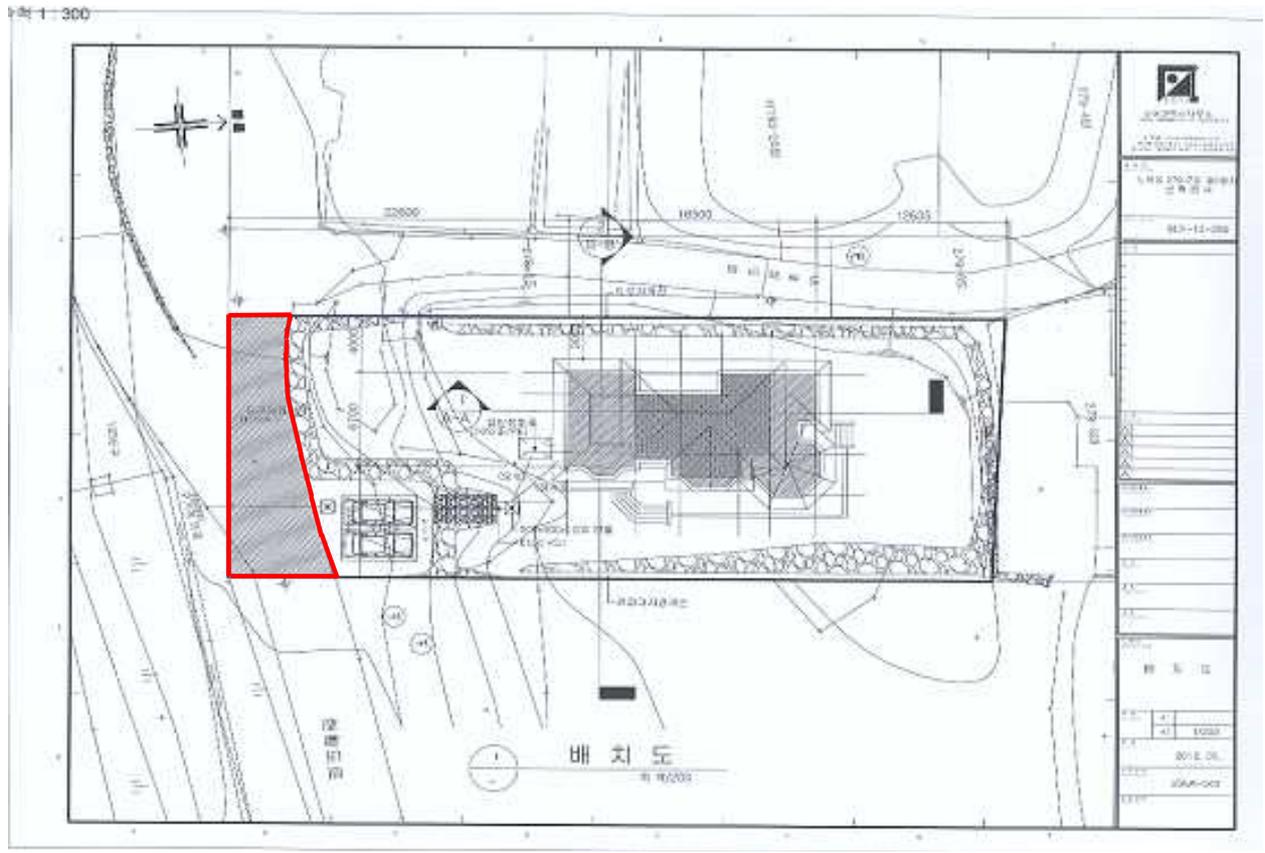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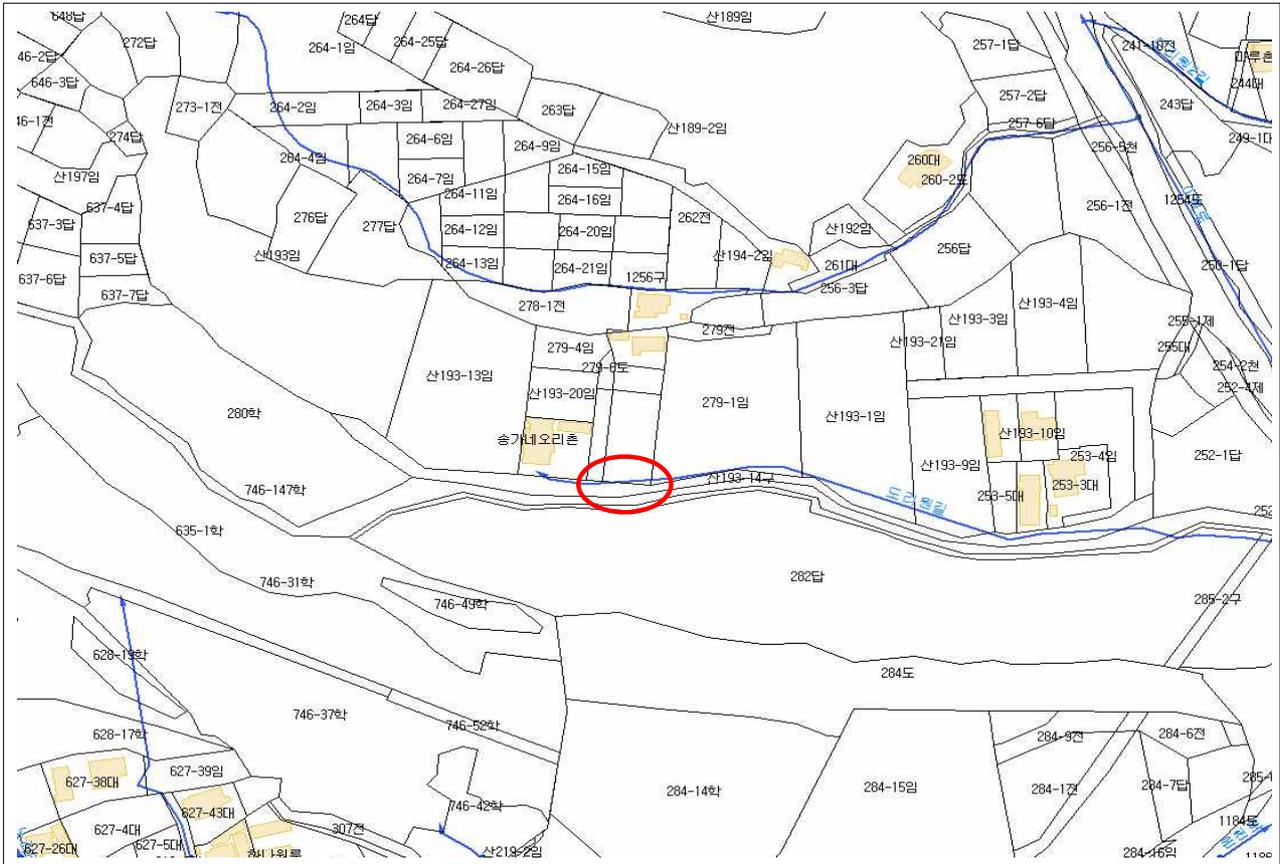
2012년 6월 18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279-7번지
3. 도로길이 : 18.4m
4. 도로너비 : 5m
5. 도로지정 면적 : 92㎡
6.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허가번호 및 허가일	비 고
			공 부 면 적	지 정 면 적			
속초시 노학동	279-7	임야	741	92	배 병 태	2012-신축허가 -44호 (2012. 06. 14)	

위치도 및 현황도



재난대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취약 지역 및 재난사각지대에 24시간 재난안전망(CCTV)을 구축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6. 20.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안전관리 사각지대 24시간 재난안전망(CCTV) 구축 사업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재난취약지역 원격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4.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주소)	설치목적	수 량	비고
1	대포동 296 제2공영주차장 뒤 절개지	재난감시용	1	
2	대포동 435 대포항편선 앞 중단된공사장	재난감시용	1	
3	대포동 322 애니텔 뒤 절개지	재난감시용	1	
4	대포동 753 외옹치항 앞 절개지	재난감시용	1	

5. 시 행 청 : 속초시청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 24시간 촬영

7. 예고기간 : 2012. 06. 20 ~ 2012. 07. 9일까지 (20일간)

8. 예고방법 : 속초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angwon.kr>)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지원팀 (☎ 033-639-2265)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우편번호: 217-701)
 - FAX : 033-639-2588
-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안전관리 사각지대 24시간 재난안전망(CCTV) 구축 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 24시간 재난안전망(CCTV)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20px;">속 초 시 장 귀하</p>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
4. 예고기간 : 2012. 6. 21 ~ 7. 10(20일)
5. 자치법규안: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하수행정담당)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해오름로 99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 (전화: 033-639-2392, FAX: 639-2497)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김명기(전화 : 033 - 639-23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

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와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제9조 또는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5일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 ²)	
지붕면적(m ²)		빗물 저류조 용량(m ³)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m ²)			
빗물 이용 예정 수량(m ³ /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m ³ /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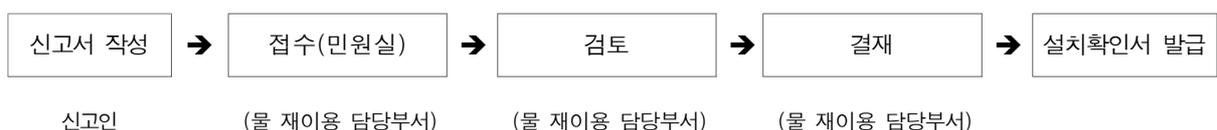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 ²)
중수처리 용량(m ³ /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m ³ /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m ³ /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오음(誤飲)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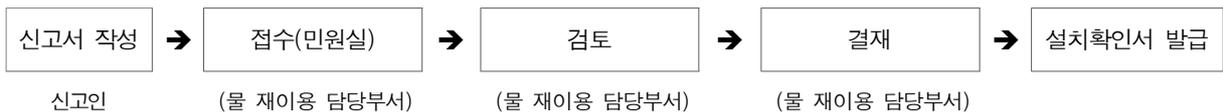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